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제1장 개요

|                     |    |
|---------------------|----|
| I. 총괄 .....         | 1  |
| II. 세입세출예산안 .....   | 3  |
| 1. 세입예산안 .....      | 3  |
| 2. 세출예산안 .....      | 5  |
| III. 성과계획서 .....    | 12 |
| 1. 임무와 비전 .....     | 12 |
| 2. 목표 및 과제 현황 ..... | 12 |
| IV. 성인지 예산 .....    | 14 |

## 제2장 검토의견

|                                                |    |
|------------------------------------------------|----|
| 1.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 15 |
| (1)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전문가 활용비 지원 예산 존속 여부 재검토 필요 ·   | 16 |
| (2) 가명처리 지원센터 성과·실적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 ..          | 19 |
|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 계획 철저 수립 필요 ... | 25 |
| 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신규) .....                      | 32 |
| (1)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 .....                         | 32 |
| (2) 성과지표 개선 .....                              | 35 |
| 4. 위원회법무지원: 집행실적에 따른 감액 조정 필요 .....            | 37 |



# 제1장 개요

## I. 총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원(0.4%) 증가한 41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5,200만원(△1.2%) 감소한 646억 2,500만원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        | 2025년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세입예산안 | 40,834 | 40,834 | 41,010           | 176         | 0.4     |
| ○ 일반회계  | 40,834 | 40,834 | 41,010           | 176         | 0.4     |
| □ 세출예산안 | 65,377 | 65,377 | 64,625           | △ 752       | △ 1.2   |
| ○ 일반회계  | 65,377 | 65,377 | 64,625           | △ 752       | △ 1.2   |

(자료: 개인정보위)

- 2025년도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추진한다는 계획임.

### 〈2025년도 주요 추진 과제〉

- 개인정보 안전활용 촉진을 통한 데이터 경제 선도
-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화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서비스 및 인프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구축을 지속
  -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 강화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는 확대 추진하되, 신규 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 추진
-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제·인증제, 실무자/전문가 대상 교육 등을 개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보호책임자 제도의 안착을 지원
  - 유노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 개인정보 사고조사 포렌식 랩 구축을 추진
-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국제 규범 및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자료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서)

## II. 세입세출예산안

###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은 410억 1,000만원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        | 2025년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합 계      | 123,505     | 40,834 | 40,834 | 41,010           | 176         | 0.4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63         | 15     | 15     | 64               | 49          | 326.7   |
| 과태료      | 897         | 737    | 737    | 790              | 53          | 7.2     |
| 과징금      | 120,940     | 38,800 | 38,800 | 38,800           | -           | -       |
| 위약금      | -           | 1      | 1      | 1                | -           | -       |
| 가산금      | 57          | 7      | 7      | 23               | 16          | 228.6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448       | 1,272  | 1,272  | 1,330            | 58          | 4.6     |
| 면허료및수수료  | -           | 1      | 1      | 1                | -           | -       |
| 기타잡수입    | -           | 1      | 1      | 1                | -           | -       |

(자료 : 개인정보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금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400만원이 편성됨.

○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억 9,0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388억원이 편성됨.
- 위약금은 계약 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3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 지출반납,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소송비용 회수액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 3,0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및수수료는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잡수입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2. 세출예산안

### 1) 총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646억 2,5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53억 7,700만원 대비 7억 5,200만원(△1.2%)이 감액 편성됨.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        | 2025년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합계     | 56,954      | 65,377 | 65,377 | 64,625           | △752        | △1.2    |
| □ 인건비  | 13,489      | 14,544 | 14,544 | 14,592           | 48          | 0.3     |
| □ 기본경비 | 2,033       | 2,295  | 2,295  | 2,418            | 124         | 5.4     |
| □ 사업비  | 41,432      | 48,538 | 48,538 | 47,615           | △923        | △1.9    |

(자료 : 개인정보위)

## 2) 인건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45억 9,2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45억 4,400만원 대비 4,800만원(0.3%) 증가함.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및 직제상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        | 2025년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인건비 합계        | 13,489      | 14,544 | 14,544 | 14,592           | 48          | 0.3     |
| 보수(110-01)    | 13,010      | 13,967 | 13,967 | 14,060           | 93          | 0.7     |
| 기타직보수(110-02) | 406         | 468    | 468    | 422              | △46         | △9.8    |
| 연가보상비(110-05) | 74          | 109    | 109    | 110              | 1           | 1.1     |

(자료 : 개인정보위)

### 3) 기본경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4억 1,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2억 9,5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5.4%)이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17억 6,900  
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 |       | 2025년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기본경비 합계            | 2,033       | 2,295 | 2,295 | 2,418            | 123         | 5.4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 26          | 28    | 28    | 24               | △4          | △14.3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 15          | 16    | 16    | 16               | -           | -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 59          | 61    | 61    | 66               | 5           | 8.2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 10          | 10    | 10    | 12               | 2           | 20.0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대변인)     | 7           | 7     | 7     | 7                | -           | -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 413         | 508   | 508   | 524              | 16          | 3.1     |
|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 307         | 296   | 296   | 285              | △11         | △3.7    |
|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 212         | 165   | 165   | 250              | 85          | 51.5    |
|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 219         | 166   | 166   | 226              | 60          | 36.1    |
|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 152         | 189   | 189   | 274              | 85          | 45.0    |
|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 86          | 110   | 110   | 143              | 33          | 30.0    |
|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 528         | 739   | 739   | 591              | △148        | △20.0   |

(자료 : 개인정보위)

####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476억 1,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2,300만원(△1.9%)이 감소함.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  |        | 2025년도<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 예산   | 추경(A)  |                  | (B-A)   | (B-A)/A |
| 주요사업비 합계                      | 41,432      | 48,538 | 48,538 | 47,615           | △ 923   | △ 1.9   |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 2,133       | 2,043  | 2,043  | 1,943            | △ 100   | △ 4.9   |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 3,034       | 4,264  | 4,264  | 3,714            | △ 550   | △ 12.9  |
| 개인정보 교육 지원                    | 1,828       | 1,268  | 1,268  | 1,068            | △ 200   | △ 15.8  |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 630         | 531    | 531    | 531              | -       | -       |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 1,521       | 1,461  | 1,461  | 2,376            | 915     | 62.6    |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 4,992       | 3,328  | 3,328  | 3,564            | 236     | 7.1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3,197       | 7,650  | 7,650  | 6,050            | △ 1,600 | △ 20.9  |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 -           | 7,546  | 7,546  | 6,045            | △ 1,501 | △ 19.9  |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 5,995       | 5,883  | 5,883  | 5,188            | △ 695   | △ 11.8  |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 1,500       | 1,228  | 1,228  | 2,000            | 772     | 62.9    |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 -           | -      | -      | 1,500            | 1,500   | 순증      |
| 개인정보침해방지                      | 10,082      | 8,686  | 8,686  | 7,486            | △ 1,200 | △ 13.8  |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           | -      | -      | 1,628            | 1,628   | 순증      |
| 위원회운영지원                       | 2,461       | 2,214  | 2,214  | 2,086            | △ 128   | △ 5.8   |
| 위원회법무지원                       | 248         | 515    | 515    | 515              | -       | -       |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 3,811       | 1,921  | 1,921  | 1,921            | -       | -       |

(자료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원(△4.9%) 감소한 19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6억원(△12.9%) 감소한 37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종사 인력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원(△15.8%) 감소한 11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과 국외 개인정보보호 규제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9억원(62.6%) 증가한 24억원이 편성됨.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원(7.1%) 증가한 36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주체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6억원(△20.9%) 감소한 61억원이 편성됨.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이종 산업·분야 간에도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송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소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5억원(△19.9%) 감소한 60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7억원(△11.8%) 감소한 52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신기술별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8억원(62.9%) 증가한 20억원이 편성됨.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및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5억원이 신규 편성됨

-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대응하고,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2억원(△13.8%) 감소한 75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신속·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6억원이 신규 편성됨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법령상 운영하는 회의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포럼, 세미나 등 정책 혁신활동 행정지원인력 운영 등 위원회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원(△5.8%) 감소한 21억원이 편성됨.
- ‘위원회법무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부과한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 등 위원회 법무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이 편성됨
- ‘위원회정보화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19억원이 편성됨

### III. 성과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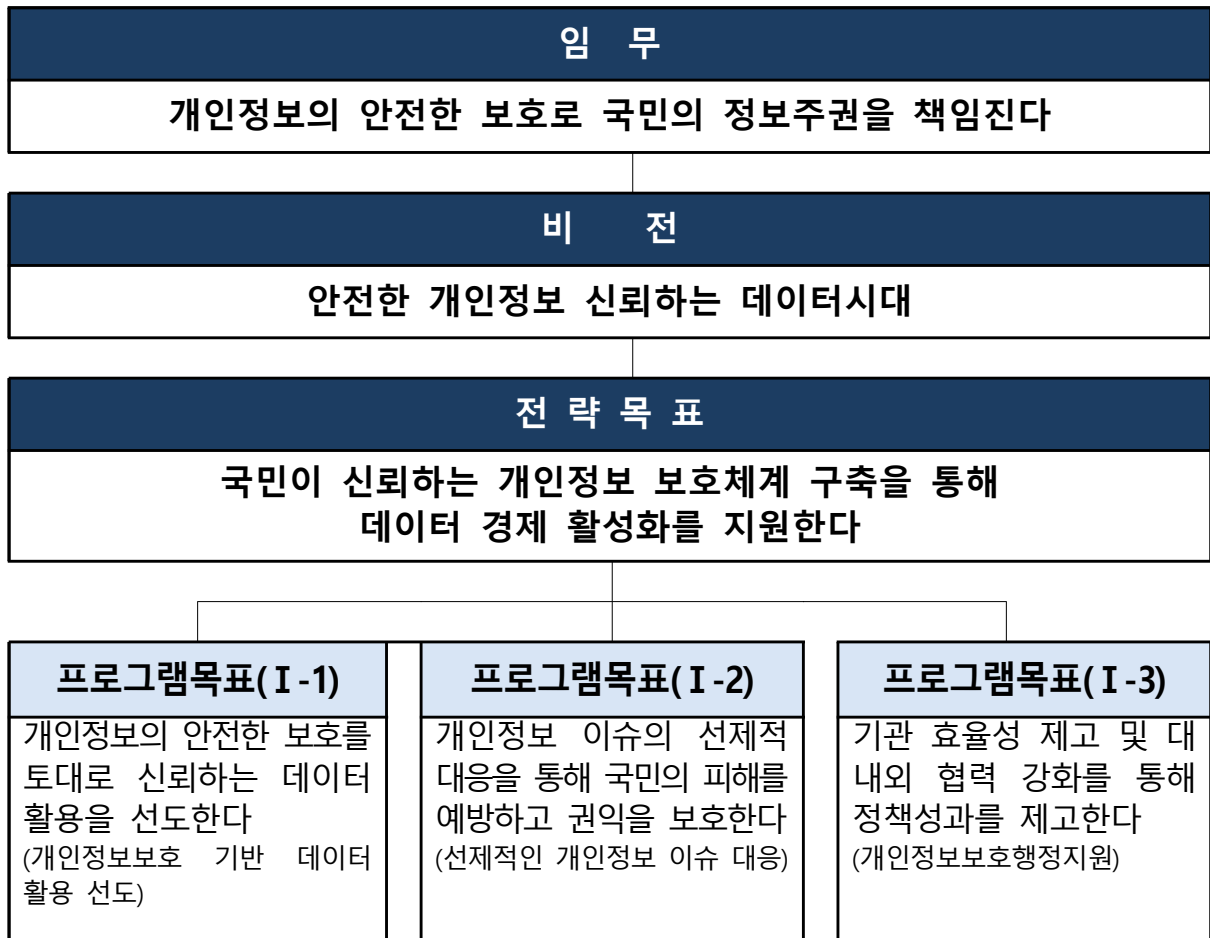
#### 1. 임무와 비전

- ☐ 개인정보위는 2025년도 임무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로 설정하였고, 비전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로 설정하였음.

#### 2. 목표 및 과제 현황

- ☐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전략목표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자료: 개인정보위)

○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단위 사업은 5개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전략목표<br>(Strategic Goal) | 프로그램 목표 |      |      |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1                        | 3       | 5    | 16   |

| 프로그램명                                                | 성과계획               |
|------------------------------------------------------|--------------------|
|                                                      | 단위사업명              |
| 전략목표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
| 프로그램목표 I-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
|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 개인정보보호강화 (1031)    |
|                                                      | 개인정보활용지원 (1032)    |
|                                                      | 개인정보보호연구 (1033)    |
| 프로그램목표 I-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
|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 개인정보이슈대응 (2034)    |
| 프로그램목표 I-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     |                    |
|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7041) |

(자료: 개인정보위)

## IV. 성인지 예산<sup>1)</sup>

☐ 개인정보위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1)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 제2장 검토의견

### 1.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sup>2)</sup>: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존속 여부 재검토 필요 등

####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지원,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검증 및 데이터 활용 기관 관리·감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 증가한 35억 6,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4,992       | 3,328          | 3,564           | 236         | 7.1     |
| - 가명정보제도운영         | 391         | 391            | 391             | -           | -       |
| - 가명처리기술지원         | 1,657       | 2,537          | 2,137           | △400        | △15.8   |
| - 가명정보 시스템<br>구축운영 | 2,944       | 400            | 1,036           | 636         | 159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① ‘가명정보 제도 운영’, ② ‘가명처리 기술지원’, ③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 2) 검토의견

### (1)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전문가 활용비 지원 예산 존속 여부 재검토 필요

동 사업은 당초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지원 예산을 존속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제도운영” 내역사업에서는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sup>3)</sup> 소요비용 지원은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시 가명정보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해주려는 것으로, 3,600만원이 편성됨.

---

3)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명처리된 결과가 목적달성에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며, 반출심사는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장 승인 전 심사를 의미함.

## 〈2025년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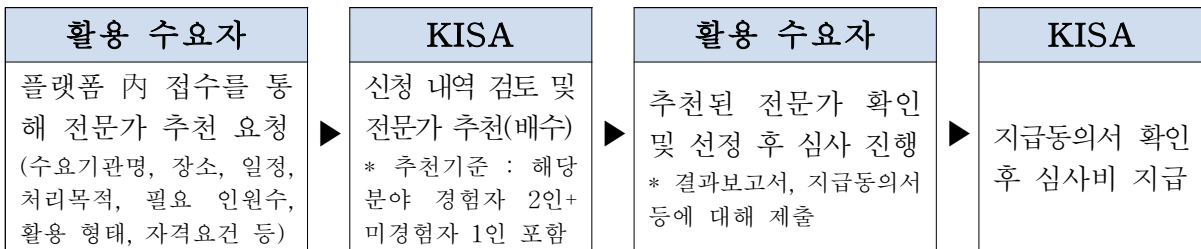
(단위: 천원)

| 2024년도 예산 |                                                                                                                                                                           | 2025년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77,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24,500</li> <li>○ 전문가 풀 역량 강화: 16,500</li> <li>○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br/>소요비용 지원:<br/>400천 원×3인×30회 = 36,000</li> </ul> | 77,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24,500</li> <li>○ 전문가 풀 역량 강화: 16,500</li> <li>○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br/>소요비용 지원:<br/>400천 원×3인×30회 = 36,000</li> </ul>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원 방식은 영세·중소기업 등 수요자가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존에 구성한 전문가 풀 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하고, 수요자가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전문가에게 심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임.

##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절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의 경우 34건에 대해 총 102명의 전문가 심사비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28건에 대해 총 66명의 전문가 심사비를 지원하였음.

###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말 | 합계      |
|----------|---------|---------|------------|---------|
| 총 지원건수   | 11건     | 34건     | 28건        | 73건     |
| 전문가 지원 수 | 31명     | 102명    | 66명        | 199명    |
| 총 지급액    | 1,180만원 | 4,080만원 | 2,050만원    | 7,310만원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한 수요자 현황을 보면, 당초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려는 사업 목적과 달리 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22년부터 심사비를 지원한 대상 기관 건수는 총 73건으로 그 중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9건(12.3%)에 불과하며, 87.7%에 해당하는 64건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음.

###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수요자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말 | 합계        |
|---------|-------|-------|------------|-----------|
| 공공기관    | 6     | 19    | 21         | 46(63.0%) |
| 대기업     | 3     | 10    | 5          | 18(24.7%) |
| 영세·중소기업 | 2     | 5     | 2          | 9(12.3%)  |
| 총 지원건수  | 11    | 34    | 28         | 73(100%)  |

주: 괄호 안은 총 지원건수(73건)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같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수요 기관이 영세·중소기업인 지와 무관하게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따르면, 동 지원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수된 가명정보 전문가 지원 신청서 기반으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데이터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당초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지원 예산을 존속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 가명처리 지원센터 성과·실적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 성과·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에는 가명처리 지원센터(서울)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sup>4)</sup>이 편성되었음.

### 〈가명처리 지원센터(서울) 운영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도 예산 |                                                                                                                                                                                                                                                                                                                                                                                                     | 2025년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5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임대비 : 1,830천원 × 12개월)</li> <li>+ 100(운영비 : 4,170천원 × 12개월)</li> <li>+ 80(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li> </ul> </li> <li>기능개선 :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기능개선사업비)</li> <li>+ 110(솔루션 2종 도입)</li> <li>+ 45(자문비 : 300천원×5인×30회)</li> </ul> </li> </ul> | 4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임대비 : 1,830천원 × 12개월)</li> <li>+ 120(운영비 : 10,000천원 × 12개월)</li> <li>+ 90(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li> </ul> </li> <li>기능개선 :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사례발굴, 교육, 컨설팅 등)</li> <li>+ 50(솔루션 1종 도입)</li> <li>+ 45(자문비 : 300천원×5인×30회)</li> </ul> </li> </ul>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가명처리를 위한 설비·공간 및 솔루션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가명·익명정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며, 가명정보 활용 및 처리 관련 법·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관련 대학 및 대학원생(서울), 실무인력(지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가명처리 지원센터는 서울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역할과 함께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강원,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

4) 3개 지역 센터에 평균 2억원 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에 구축되어 있음.

- 이 중 강원, 부산, 대전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구축 시 국비가 지원되었고 매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과 대구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 투입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전문가 등 실무 지원만을 하고 있음.

###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신규 구축연도 | 구축 시 국비 집행현황 | 2024년 운영비 지원 현황 |     |
|----|---------|--------------|-----------------|-----|
|    |         |              | 국비              | 지방비 |
| 강원 | 2021    | 2.8          | 2.2             | 2.2 |
| 부산 | 2022    | 3.0          | 1.8             | 1.8 |
| 인천 | 2023    | -            | -               | -   |
| 대전 | 2023    | 3.0          | 2               | 2   |
| 대구 | 2024    | -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및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가명처리 인프라 이용 실적은 2022년 8회, 2023년 16회, 2024년 15회, 컨설팅 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12회, 13회, 23회, 적정성 검토 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2회, 3회, 8회 등으로 교육 및 실습 실적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이용 실적〉

(단위: 건)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9월 말) |      |
|---------|-------|------|-------|------|-------------|------|
|         | 이용실적  | 월평균  | 이용실적  | 월평균  | 이용실적        | 월평균  |
| 가명처리    | 8     | 0.7  | 16    | 1.3  | 15          | 1.7  |
| 적정성 검토  | 2     | 0.2  | 3     | 0.3  | 8           | 0.9  |
| 컨설팅     | 12    | 1    | 13    | 1.1  | 23          | 2.6  |
| 교육 및 실습 | 165   | 13.8 | 261   | 21.8 | 133         | 14.8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월별 이용실적으로 살펴볼 경우 2024년에 가명처리 또는 적정성 검토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월도 나타나는 등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업무지원 기능(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컨설팅) 수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임.

### 〈2024년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월별 이용 실적〉

(단위: 건)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합계  |
|---------|----|----|----|----|----|----|----|----|----|-----|
| 가명처리    | 3  | 1  | 1  | 4  | 0  | 2  | 1  | 2  | 1  | 15  |
| 적정성 검토  | 0  | 0  | 2  | 0  | 0  | 1  | 4  | 1  | 0  | 8   |
| 컨설팅     | 3  | 2  | 2  | 2  | 5  | 1  | 1  | 5  | 2  | 23  |
| 교육 및 실습 | 0  | 8  | 2  | 7  | 11 | 1  | 5  | 60 | 39 | 133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강원, 부산, 대전센터의 경우에도 교육 및 실습에 비해 업무지원 기능 수행 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등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이용 실적〉

(단위: 건)

| 구분      | 강원   |      |      | 부산   |      |      | 대전   |
|---------|------|------|------|------|------|------|------|
|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4 |
| 가명처리    | 10   | 6    | 2    | 2    | 8    | 8    | 1    |
| 적정성 검토  | 11   | 15   | 14   | 1    | 3    | 1    | 3    |
| 컨설팅     | 17   | 35   | 18   | 8    | 17   | 28   | 10   |
| 교육 및 실습 | 9    | 31   | 9    | 8    | 21   | 6    | 5    |

주: 대전센터의 경우 2023년말 개소하여 2024년 이용실적만 제시 / 2024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가명처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이나, 가명처리 인프라나 적정성 검토 등 업무지원 기능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3개 지역센터의 연도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2024년부터 도입하였음.

- 2024년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강원센터의 경우 10%를 추가 지급하였고, 성과가 낮은 부산센터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함<sup>5)</sup>.

- 다만 서울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3개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6억원으로, 2023년까지는 센터별 2억원씩 균등지급하였음.

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함.

-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성과·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sup>6)</sup>: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 계획 철저 수립 필요

###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sup>7)</sup> 이른바 “마이데이터” 행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송체계 표준화 등 연계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

6) 세부사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7)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및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원 감소한 60억 5,0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br>보장       | 3,197       | 7,650          | 6,050           | △1,600      | △20.9   |
| - 마이데이터 산업간<br>연계체계 구축 | 2,410       | 5,970          | 4,670           | △1,300      | △21.8   |
| -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 -           | 1,680          | 1,380           | △300        | △17.9   |
| - 개인정보 전송지원<br>플랫폼     | 787         | -              | -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①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②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 검토의견

중계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는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지원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2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수신자, 중계 전문기관 등 참여자 간 데이터 전송 절차와 보안·인증 등 전송규격을 반영한 중계시스템 모델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에는 통신, 유통 2개 분야에 대해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에너지 분야 중 전기, 가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실증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와 동일한 14억 7,000만원이 편성됨.

○ 중계기관 운영지원은 이러한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중계시스템을 구축한 중계기관에 대해 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정보 전송자, 수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5년도 예산안에는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도 예산 |                                             | 2025년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470     | ○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br>1,470<br>- 분야: 통신, 유통 | 2,470      | ○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br>1,470<br>- 분야: 에너지(전기, 가스)<br><br>○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 1,00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년도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은 통신과 유통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컨소시엄에 대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5년 3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이전 별도의 지정절차를 통해 중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2025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임.

○ 2024년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기관은 중계시스템 모델을 개발·구축하고 실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각각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중계시스템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방식임.

##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사업 선정 컨소시엄 구성 현황〉

| 컨소시엄 명 | 코스콤 컨소시엄       |                        |                     |
|--------|----------------|------------------------|---------------------|
| 구성 현황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수요기관                |
| 기관 명   | (주)코스콤<br>중견기업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br>비영리기관 | NICE평가정보(주)<br>중견기업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러나 2024년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의 대상 분야인 통신과 유통 중 유통 부문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통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여부를 유예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5년도 중계기관 운영지원은 통신 분야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임.

□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중계기관 운영지원 예산(10억원)은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도에 중계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참여자(정보 전송자, 수신자)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비용부담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sup>8)</sup>되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보 수신자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

<sup>8)</sup> 2025.3.14. 예정

제공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요청하고, 정보 제공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요청받은 정보를 정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게 됨.

- 이 과정에서 정보 수신자는 정보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 제공자는 중계전문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금체계가 형성될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과금체계가 제도 시행(2025년 3월) 초기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중계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정보제공자 등의 비용 부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계전문기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전송자가 중계전문기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데이터 전송 대가) 부담을 낮춰서 최종적으로 정보 수신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임.

○ 다만, 이러한 과금체계가 조기에 형성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계전문기관에게 지원하는 운영비가 실제 정보 제공자 및 정보 수신자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계전문기관 지정 과정에서 중계전문기관이 정보 전송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운영비 지원액에 맞춰 낮추는 조건

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향후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운영비 지원이 점차 감소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중계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신규)<sup>9)</sup>: 사업수행방식 변경

####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조사결과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사고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6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함.

#### 〈2025년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           | -              | 1,628           | 1,628       | 순증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 검토의견

##### (1)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은 사업 전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용별 검토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보호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9) 세부사업: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2034-302)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디지털포렌식이 불가하여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 형식으로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실시<sup>10)</sup>하고 있으나, 시스템 해킹 원인 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sup>11)</sup>가 있어, 디지털포렌식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sup>12)</sup>

□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기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정확한 원인을 도출하고 조사결과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로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을 편성한 것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연금으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포렌식 룸을 구성하며, 포렌식 활용을 위한 조사관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 2025년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 사업출연금(350-02) : 1,628,000천원

가.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환경 구축 (1,198,000천원)

-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 : 898,000천원×1식=898,000천원
- 대용량 로그분석 환경 구축 : 300,000천원×1식=300,000천원

나.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비 (3,5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 공사비 : 200,000천원×1식=20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 기본 기자재 : 150,000천원×1식=150,000천원

다. 조사관 기술교육비 (8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초급 : 4,000천원×10명=4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고급 : 8,000천원×5명=40,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163건('21년)→167건('22년)→318건('23년)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유출의 97%가 전자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호위원회는 그 중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는 48%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11) 시스템 해킹 원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대용량 로그 분석이 필요하나, 포렌식 장비가 없는 경우 수십 만건에 달하는 로그기록을 엑셀파일 등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 경과로 로그기록이 삭제되는 사례가 있음.

12) 유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각 정부 부처에는 포렌식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조사 환경을 구축<sup>13)</sup>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장비 구축 및 보호위원회조사관 교육훈련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보호위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여건상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보호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포렌식 장비 구축 비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여 관련 장비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산으로 하는 구축하기보다는 자산취득비(430-01) 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디지털포렌식 활용도 제고에 필수적인 기술교육은 보호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보호위원회 조사관 교육훈련 비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이 아닌 보호위원회 자체 교육훈련 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13)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방지사업’ 중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출사고에 대한 기술적 사항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 환경을 구축하면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예산을 이용한 유출사고 기술지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을 수행하려는 것임.

- 참고로, 타 부처<sup>14)</sup>의 경우, 포렌식 장비 구축 및 운영을 부처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2) 성과지표 개선

개인정보 사고조사지원의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인데, 이는 동 사업의 단위사업인 개인정보이슈대응(2034)의 타 사업인 ‘개인정보침해방지’(2034-301)에 적용되는 성과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5목표치<br>산출근거                                                                                                                                                                | 측정 산식<br>(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br>(또는 자료출처)         |
|----------------------------------------------------|-----|-------|-------|-------|------|------|-------------------------------------------------------------------------------------------------------------------------------------------------------------------------------|-------------------------------------------------|-----------------------------|
| 개인정보<br>노출 및<br>불법유통<br>게시물 탐지<br>삭제율<br>(단위 : % ) | 목표  | 93.7  | 94.7  | 95.0  | 95.8 | 95.9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인 94.8%에서 '22년'23년간 실적 상승률(0.9%p) 및 웹사이트 운영 중자폐업 운영자 소재불명 등 도전적 지표 설정의 외부적 제약을 감안하여 '23년 실적대비 0.2%p 추가 상향한 95.9%로 설정<br>* '21년(94.1%), '22년(94.8%), '23년(95.7%) | ○ 탐지된 홈페이지 중 개인정보 삭제페이지수/ 모든 홈페이지 탐지 페이지수 x100% |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시스템 |
|                                                    | 실적  | 94.1  | 94.8  | 95.7  | -    | -    |                                                                                                                                                                               |                                                 |                             |
|                                                    | 달성도 | 100.4 | 100.1 | 100.7 | -    | -    |                                                                                                                                                                               |                                                 |                             |

14)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 동 사업의 목표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유사사업의 사례<sup>15)</sup>를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사고 수 대비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입수한 디지털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건수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15)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공정거래위원회)

#### 4. 위원회법무지원<sup>16)</sup>: 집행실적에 따른 감액 조정 필요

#####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위원회법무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대 소송의 수행,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억 1,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위원회법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위원회법무지원     | 248         | 515            | 515             | 0           | 0       |
| - 국가송무수행지원  | 195         | 420            | 420             | 0           | 0       |
|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 54          | 95             | 95              | 0           | 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 검토의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는 매년 과다편성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이용지원’사업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와 민간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16) 세부사업: 위원회법무지원(7041-301)

###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 '24년 예산                                                                               | '25년 예산                                                                                     |
|---------------------------------------------------------------------------------------|---------------------------------------------------------------------------------------------|
| <input type="checkbox"/>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24) 80백만원<br>○ 세부산출: 1건×400천원×3인×66회=80,000천원 | <input type="checkbox"/>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25) 80백만원 (전년동)<br>○ 세부산출: 1건×400천원×3인×66회=80,000천원 |
| <input type="checkbox"/>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 ('24) 15백만원<br>○ 세부산출: 12개월×1,250천원=15,000천원 | <input type="checkbox"/>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 ('25) 15백만원(전년동)<br>○ 세부산출: 12개월×1,250천원=15,000천원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최근 동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법률정보시스템은 매년 거의 전액이 집행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에는 집행률이 39.0%에 불과하였고, 2024년에도 9월 현재 20.0% 수준임.

###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 2022년 |    |      | 2023년 |    |       | 2024.9월 말 |    |       |
|---------------|--------------------|-------|----|------|-------|----|-------|-----------|----|-------|
|               |                    | 예산    | 집행 | 집행률  | 예산    | 집행 | 집행률   | 예산        | 집행 | 집행률   |
| 법률서비스<br>이용지원 | 고문변호사<br>법률자문료     | 103   | 52 | 50.5 | 100   | 39 | 39.0  | 80        | 16 | 20.0  |
|               | 법률정보서비스<br>시스템 이용료 | 15    | 14 | 93.3 | 15    | 15 | 100.0 | 15        | 15 | 100.0 |
| 합 계           |                    | 118   | 66 | 55.9 | 115   | 54 | 47.0  | 95        | 31 | 32.6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 동안의 법률자문료 지급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최근 3년 보호위원회의 법률 자문료 지급 현황을 보면, 보호위원회

는 자문 건당 평균 약 30만원<sup>17)</sup> 내외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자문 건수<sup>18)</sup>도 예산 편성시의 예상치(66회)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법률자문료 지급 현황〉

(단위: 회, 명, 만원)

| 사업명      | 2022년 | 2023년 | 2024.9월 말 |
|----------|-------|-------|-----------|
| 자문 횟수    | 48    | 34    | 20        |
| 평균 자문 인원 | 2.9   | 3.1   | 2.6       |
| 평균 자문료   | 29.8  | 31.5  | 30.6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따라서 최근 법률자문료 지급 현황과 매년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 의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 (6788-5104)  
(6788-5106)

17) 2022년부터 2024년 9월말 까지 지급된 자문료 평균 금액은 30.5만원임.

18) 2022년 48건, 2023년 34건, 2024년 9월말 기준 20건